

의안번호	2215071
의 퇴 인	조지연의원
회 답 일	2026.5.13.
추계번호	25D682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상이등급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줄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3조 6,186억 5,600만원(연평균 7,237억 3,100만원)으로 추계됨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2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검진 항목·범위·주기 및 기존 국가건강검진·보훈의료제도와의 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아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유족 수당승계	555,143	623,238	700,158	787,070	885,299	3,550,908	710,182
수송시설 이용지원	13,327	13,437	13,549	13,661	13,774	67,748	13,550
합계	568,470	636,675	713,707	800,731	899,073	3,618,656	723,731

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2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검진 항목·범위·주기 및 기존 국가건강검진·보훈의료제도와의 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 재정소요 추계결과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유족으로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를 법 적용대상자에 포함	의무규정
2	안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7조의11(건강검진 지원)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8조의8(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적용 대상자)	○	—
2	안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	—
3	안 제7조의11(건강검진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2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검진 항목·범위·주기 및 기존 국가건강검진·보훈의료제도와와의 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4	안 제8조의8(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유족으로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를 법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 지급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에게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 발생

-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당 승계인원은 2026년 기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망인원 46,014명에 2021~2023년 연평균 증가율 8.3%를 적용하여 산정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의 월 지급액은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등 3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사망자의 등급 관련 자료 부재로 등급별 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2025년 평균지급단가에 최근 5년간 평균지급단가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보상금의 경우 본인이 수령하는 보상금 대비 유족 승계 보상금 비율은 약 50~90% 수준이며, 보상금 금액이 낮을수록 유족 승계 보상금 비율은 높은 경향이 있음
 - 수당의 경우, 유족에게 승계된 사례가 없고 보상금 대비 수당 금액이 낮은 경향이 있어 추계에서는 본인이 수령하는 수당의 100%가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

(단위: 천원)

대상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1,296	954	626

자료: 국가보훈부

- (수송시설 이용지원)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 할인·감면 시 추가재정소요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송시설 감면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¹⁾을 적용하여 산정함
- 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1)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3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 대한 수당의 승계

- (수당지급 대상)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 대해 수당이 승계될 경우, 추가 수당수급자 수는 2026년 기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인원 46,014명에 향후 매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여 신규로 발생할 유족수를 더하여 산정

[표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지급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증가율
지원대상(명)	35,763	35,073	34,285	33,067	30,791	-2.1
사망인원(명)	2,210	2,446	2,590	-	-	8.3
월 지급단가(천원)	712.2	709.0	755.2	780.6	856.0	4.7
총 예산(백만원)	305,634	298,384	310,694	309,760	316,267	0.8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유족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유족이 남아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기간 중 유족의 사망률은 고려하지 않음

[표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환자 사망인원	3,563	3,859	4,179	4,526	4,901
누적 유족수	49,304	52,867	56,726	60,905	65,4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월 지급단가) 수당의 월 지급단가는 2025년 평균지급단가에 최근 5년간 평균지급단가 연평균증가율 4.7%를 적용하여 산정함

[표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월 지급단가 추정: 2027~2031년

(단위: 천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월 지급단가	938.3	982.4	1,028.6	1,076.9	1,12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누적 유족수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월 지급단가에 12개월을

급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 시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총 예산(백만원)	555,143	623,238	700,158	787,070	885,2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수송시설 이용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감면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를 산정
- (지원인원) 2025년 11월 기준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12,448명, 고엽제후유의증 73,212명(등급자+등외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245명(등급자+등외자)를 모두 합한 85,905명에 최근 5년간 수송시설 이용 지원인원 연평균 증감률 -1.1%를 적용하여 산정

[표 8] 수송시설 이용지원 인원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지원인원	83,943	82,979	82,026	81,083	80,1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2024년 기준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
 - 민영버스의 경우, 2023년부터 전국호환카드 시행으로 실제 시내버스 감면액을 산출하고 있어 2023년과 2024년에 편성된 예산보조액은 실제 감면액에 비해 부족했으나, 2026년 예산에 감면액 부족액 정산분(2023년 40억 1,700만원, 2024년 59억 900만원)이 반영되었음

[표 9] 수송시설 이용지원 현황

구 분		대상인원	보조액	보조액 단가
민영버스	2020	115,789	9,605	82,953
	2021	114,398	8,419	73,594
	2022	112,066	8,984	80,167
	2023	110,604	12,376	111,895
	2024	110,560	14,373	129,993
고속철도	2020	115,789	2,403	20,753
	2021	114,398	1,663	14,537
	2022	112,066	1,663	14,839
	2023	118,761	2,163	18,213
	2024	119,080	2,163	18,164
내항여객선	2020	115,789	74	639
	2021	114,398	76	664
	2022	112,066	82	732
	2023	110,604	197	1,781
	2024	110,560	102	923
합계	2020	115,789	12,082	104,345
	2021	114,398	10,158	88,795
	2022	112,066	10,729	95,738
	2023	110,604	10,719	131,889
	2024	110,560	10,729	149,080

주: 1) 민영버스의 경우 2022년까지 버스연합회가 감면액을 추계했고 그 중 일부만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나, 2023년부터 전국호환카드 시행으로 실제 감면액이 산출됨. 2023~2024년 보조액은 2026년 예산에 편성된 감면액 부족분 정산액을 포함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 고속철도 이용감면 대상 증가하였음. 합계의 대상인원은 민영버스와 내항여객선을 기준으로 함

3) 2023년 내항여객선에 대한 보조액 증가는 2022년예산 부족에 따른 미지급액을 2023년 집행한 데 따름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10] 수송시설 이용지원 단가 추정: 2027~2031년

(단위: 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지원단가	158,763	161,938	165,177	168,481	171,8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수송시설 이용지원 인원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 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1]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추가재정소요	13,327	13,437	13,549	13,661	13,774	67,7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사망 시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상이등급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국가, 지방자립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줄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3조 6,186억 5,600만원으로 추계됨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2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검진 항목·범위·주기 및 기존 국가건강검진·보훈의료제도와와의 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아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표 1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유족 수당승계	555,143	623,238	700,158	787,070	885,299	3,550,908
수송시설 이용지원	13,327	13,437	13,549	13,661	13,774	67,748
합계	568,470	636,675	713,707	800,731	899,073	3,618,656

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2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검진 항목·범위·주기 및 기존 국가건강검진·보훈의료제도와와의 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 추계결과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 대상이 된 인원을 2026년 기준 기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에 2021~2023년간 사망자수 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인원을 추정하고, 수당 지급단가는 등급별 지급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2025년 평균지급단가에 최근 5년간 평균지급단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